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화·자연유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71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 (안 별표 제219호 및 제220호)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31.

다. 회 부 일 : 2025.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문화유산”이라 함) 및 천연기념물 등(이하 “자연유산”이라 함)은 소유자인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전시관과 같은 관람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등을 전제로 일부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및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안 별표 제219호 및 제220호)

현행	개정안
<신설>	○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및 제220호)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5%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또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7170)에 따라 국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법」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장기로 사용허가 하기 위하여 별표에 그 근거를 추가하는 것임.

또한 「문화유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문화유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는 「자연유산법」에도 적용됨.

참고로 「문화유산법」 제34조³⁾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유산법」 제26조⁴⁾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유재산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중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

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관리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이나 장기사용허가를 통해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장기적 보존과 국민 친화적 관람 여건 조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둘째, 현행법은 관리단체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⁵⁾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이 국유재산 사용료로 다시 지출되는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하고 장기적 관점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관리·보존을 위해서 국유재산 무상사용과 장기사용허가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가 다른 지원수단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⑤ (생략)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문화유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7170)은 국유재산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를 관리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관리단체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체의 구체성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특례의 요건으로 국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유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의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 요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⁶⁾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한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7170)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⁷⁾.

6)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7)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특례신설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존속기한 설정 원칙에 비추어 존속기한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2032년 12월 3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07170호)

제66조의2(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국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를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 신 설 >	<table><tr><th>연번</th><th>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th><th>특례유형</th><th>존속기한</th></tr><tr><td>219</td><td>「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td><td>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td><td>2034. 12. 31.</td></tr><tr><td>220</td><td>「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td><td>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td><td>2034. 12. 31.</td></tr></table>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1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4. 12. 31.	2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4. 12. 31.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1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4. 12. 31.													
2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4. 12. 31.													

문 의 처
02)6788-5150